

광주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0나5444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전북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대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민지

피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강

담당변호사 최명수

변 론 종 결 2021. 4. 8.

판 결 선 고 2021. 5. 13.

제1 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3. 12. 선고 2020가단500612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분의 1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2017. 7. 5.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7. 7. 5. 접수 제1167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21. B와 사이에, B이 F은행으로부터 받는 대출금에 관하여 보증금액 2,000만원, 보증기한 2019. 2. 20.까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B이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의해 산정한 지연손해금 등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이 F은행에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연체하여 2017. 11. 21. 신용보증사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8. 4. 11. F은행에 B의 대출원리금 합계 13,229,374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11.부터 2019. 11. 21.까지 B으로부터 335,504원을 회수하였고, 위 335,504원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회수일까지의 확정손해금은 23,320원이다.

라. B은 2017. 7. 5. 자신의 누나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분의 1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500만 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7. 7. 5. 접수 제11673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2017. 11. 21.경, B의 개인회생사건에서 부인권행사명령을 신청한 2018. 1. 18.경 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존재를 알게 된 2018. 3. 19.경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사실과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았고, 그로부터 제척기간 1년이 도과된 2020. 1. 10.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4648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1, 12, 1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B이 2017. 12. 21. 전주지방법원 2017개회24172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2. 28. 원고에 대하여 금지명령을 발령하여 위 명령이 2018. 1. 2.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② 원고가 2018. 1. 18. 위 법원에 'B이 전주시 완산구 K아파트, L아파트 M호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 신청일 60일 이전에 N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위 이전 당시는 B의 개인회생절차 신청이유 및 신용정보 자료 등에 의하더라도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위 아파트를 처분하였으므로 B은 위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부인권행사명령을 신청한 사실, ③ 원고가 중소기업벤처기업부로부터 지적전산자료 이용심사 승인을 받아 2018. 3. 19.경 전라북도 토지정보과에 지적전산자료 이용을 요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존재를 알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B의 개인회생절차에서 부인권행사명령을 신청할 당시인 2018. 1. 18. B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고 있었고, 그 이후인 2018.

3. 19.경 지적전산자료를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2017. 7. 5.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존재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2018. 3. 19.경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사해행위이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된 2018. 3. 19.로부터 제척기간 1년이 경과한 2020. 1. 10.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 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선희, 판사 김평호, 판사 김혜진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광주 남구 C 대 38㎡
2. 광주 남구 D 대 195㎡
3. 광주 남구 D

[도로명주소]

광주 남구 E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 주택 33.7㎡

부속건물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 광 23.1㎡

시멘트 블록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 축사 14.5㎡, 꺾.

